규제영향분석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목 차>

1.수거 등과 관련한 이행계획서 제출·보완요구·결과보고·이행점검·사실공표 등 제반조치
2.불법 제품·서비스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작성자	이름	김영국
	담당부서(과)	산업표준혁신과		직급	공업연구관
	국장	박종섭		연락처	0438705382
	과장	배진한		이메일	ykengland@korea.kr

2026. 10. 20.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박종섭 (서명)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수거 등과 관련한 이행계획서 제출 · 보완요구 · 결과보고 · 이행점검 · 사실공표 등 제반조치</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의 2 제29조의 3</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 2 제0조</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10.29~2026.12.08</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부적합 인증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수거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 · 보완, 결과보고 및 이행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거등 명령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ㅇ(제29조)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ㅇ(제29조 및 제29조의2) 수거등을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ㅇ(제29조의3) 수거등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품목명, 명령 사유 및 내용, 상호 등 공표사항 구체화</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KS인증기업</td><td>연간 약 10개 기업
(최근 3년간 KS 인증취소 31건 기준)</td></tr><tr><td>이해관계자</td><td>해당 인증제품의 소비자 및 유통업체</td><td>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반 국민</td></tr></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수거등 이행계획서 제출, 결과보고 및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수거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인증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td></tr>
<tr><td rowspan="6">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5">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피규제자</td><td>41.3</td><td></td><td>41.3</td></tr>
<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
<tr><td>정성분석</td><td></td><td></td><td></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r><td>11.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
<tr><td></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able>

<table>
<tr><td rowspan="11">기타</td><td rowspan="7">12.규제일몰제</td><td>대분류</td><td colspan="2">소분류</td></tr>
<tr><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3"><table><tr><th>일몰설정여부</th><th>일몰조문</th><th>연장여부</th></tr><tr><td></td><td></td><td></td></tr><tr><th>일몰유형</th><th>일몰설정기간</th><th>일몰주기</th></tr><tr><td></td><td></td><td></td></tr></table></td></tr>
<tr><td>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3">해당없음</td></tr>
<tr><td>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td><td colspan="3"><table><tr><th>적용여부</th><th>비용</th><th>편익</th><th>연간균등순비용</th></tr><tr><td>적용</td><td>41.3</td><td></td><td>5.21</td></tr></table></td></tr>
<tr><td>15.규제정비 계획</td><td colspan="3">해당없음 해당없음</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수거등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	1. ~ 4. (현행과 같음)
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거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거등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수거등 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④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현 행	개 정 안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거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거 내용과 실적	<삭 제>
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삭 제>
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29조의2(이행점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수거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만으로 수거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보완명령의 내용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야 한다. 제29조의3 (수거등의 명령 사실의 공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품목명, 상표 또는 모델명 2. 수거등의 명령 사유 및 내용 3.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의 상호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이행계획서 제출 및 보완, 결과보고,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등의 세부 절차 마련으로 수거등 명령의 실효성을을 확보하고함

○ 특히 최근 3년간(2023~2025년) KS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인증취소 처분이 총 31건 발생하는 등 불량제품에 대한 대국민 보호가 필요하여 수거등 명령에 대한 이행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수거등 명령의 이행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내용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및 보완절차, 결과보고,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수거등 명령에 대한 자율이행
	내용	수거등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행점검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수거등 명령의 이행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	이행계획서 보완 및 결과보고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발생 가능
규제대안2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고 업체의 자율성이 높아짐	제품수거는 불법·불량제품의 회수를 전제로 하나, 이를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경우 수거등 명령

		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인증기업 등	26.11.9-12, 광주·부산·대전,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수거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 및 보완, 결과보고,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이행계획서 제출기한과 보완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기업이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수거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보완명령 및 명령 사실의 공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해당 규제대안1을 선택

3. 규제목표

ㅇ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결과보고 및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거등 명령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부적합 인증제품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와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KS 인증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은 부적합 인증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수거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이행절차와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정함

○ 이행계획서 제출·보완 및 결과보고 의무는 수거등 명령을 받은 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이행계획서 보완은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만 요구하도록 하여 규제범위를 최소화함

○ 또한 수거등의 이행 여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명령은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였으므로 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거등 명령을 받은 모든 KS 인증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부적합 인증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기존 수거명령의 이행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이행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수거등 명령 대상 기업의 규모와 품목이 다양하고, 기업 규모별 이행비용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함
④ 대상 업종		KS 인증제품 제조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 본 개정안은 수거등 명령을 받은 KS 인증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부적합 인증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KS 인증은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취득하는 임의인증이나 인증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제품 우선구매 등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에 따른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도 동일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규모에 따라 수거등 명령의 이행절차를 차등 적용할 경우 부적합 인증제품에 대한 관리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부적합 인증제품으로 이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수거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규제 일몰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제품 수거등의 권고절차,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수거등 명령의 이행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1.3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수거등 명령의 이행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41.3		41.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1.3		41.3
기업순비용		41.3	연간균등순비용	5.21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 수거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이행계획서 제출 및 보완, 결과보고 등에 따른 일부 행정적 부담은 발생할 수 있으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규제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수거명령 제도의 이행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존 행정조직과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행정조직 및 예산을 활용한 수거등 이행관리 절차 운영으로별도 예산편성 불요, 추가 재정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박용갑 의원, ’25. 2. / 박성훈 의원, ’25. 6. / 송재봉 의원, ’26. 1. / 이재관 의원, ’26. 1. / 오세희 의원, ’26. 1. / 정진욱 의원, ’26. 2.)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6. 5.)

○ 산업표준화법 개정·공포 (공포 ’26. 9., 시행 ’27. 3.)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26. 11.)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부처협의): ’26. 10~12월

○ 규제 심사: ’26. 12~1월

○ 법제처 심사: ’26. 1~2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26. 2월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거등의 이행계획서 제출·보완, 이행점검, 보완명령 및 사실공표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이행하고 수거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해당

○ 기존 수거명령 제도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과 보완절차,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여 규제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비례원칙에 부합

ㅇ 또한 기존 행정체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부적합 KS 인증제품의 유통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수거등 명령의 이행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1.3		41.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1.3		41.3
기업순비용		41.3	연간균등순비용	5.21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수거등 명령의 이행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KS인증기업
활동제목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보완 및 보완명령 이행 결과 보고
비용항목	기타
비용	41,301,85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피규제 기업 수 × 기업당 투입 인원 × 업무 소요시간 × 시간당 임금 × 연간 발생 횟수(10*1*16*32623*1)
근거설명	**ㅇ 규제비용 식별** - (수거등 명령에 따른 추가 의무) 수거등 명령을 받은 기업은 이행계획서의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고,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3항) - (기존 비용 제외) 현행 수거명령 제도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결과보고 및 제품 회수·수리 등의 비용은 기존 의무에 해당하므로 추가 규제비용 산정에서 제외함 - (이행점검 대응 비용) 수거등 명령의 이행점검은 관계기관에서 수행하나, 현장점검 시 기업의 관련 자료 준비 및 점검 대응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실제 현장점검 실시 여부와 소요시간을 사전에 산정하기 어려워 정량비용에는 반영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검토함 - (이행기한 신설에 따른 비용)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는 기존 의무에 해당하며, 제출·보완 및 이행기한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인력 투입이나 외부 용역 등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정량비용에서 제외함. 단, 보완자료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산정함 **ㅇ 규제비용 산출** - (피규제 기업 수) 국가기술표준원「2025년 핵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KS 인증취소 처분은 총 31건으로 연평균 약

10.3건임. 인증취소 시 수거등 명령이 이루어지고 인증취소 1건당 1개 기업이 해당한다는 분석상 전제하에 연간 피규제 기업 수를 10개로 가정함 (2023년 10건, 2024년 15건, 2025년 6건)

인증취소 건수와 실제 수거등 명령 대상 기업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비용 산정을 위한 추정치로 활용함

- (업무 소요시간) 2026년 11월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확인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행계획서 보완 및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에 각각 담당자 1명이 1일(8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여 기업당 총 16시간을 적용함
- (업무 발생 횟수) 행계획서 보완요구 및 보완명령은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만 발생하나, 규제비용이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모든 수거등 명령 대상 기업에 각각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을 보수적으로 산정함(상한 추정)
- (시간당 임금)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의 2025년 12월 제조업 월평균 임금총액 5,832,938원을 월평균 총근로시간 178.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당 임금 32,623원을 적용함
- (연간 규제비용) 피규제 기업 수 × 기업당 투입 인원 × 업무 소요시간 × 시간당 임금 × 연간 발생 횟수
 = 10개사 × 1명 × 16시간 × 32,623원 × 1회
 = 5,219,680원/년
- (총 규제비용) 규제시행년도인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할인율 4.5%를 적용한 결과, 분석기준년도인 2026년 기준 총 규제비용의 현재가치는 약 41.30백만원으로 추정됨
- (연간균등순비용) 총 규제비용의 현재가치를 연금현가계수 7.9127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약 5.22백만원으로 추정됨

ㅇ 민감도 분석

- 실제 수거등 명령 대상 기업 수 및 업무 소요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피규제 기업 수와 업무 소요시간을 달리 적용한 경우의 비용 변동을 분석함

구분	연간 기업 수	기업당 소요시간	연간 비용	10년 현재가치
낮음	5개	16시간	2.61백만원	20.65백만원
기준	10개	16시간	5.22백만원	41.30백만원
높음	20개	40시간	26.10백만원	206.51백만원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KS 인증제품을 구매 · 사용하는 소비자
활동제목	부적합 KS 인증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편익항목	안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수거등 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 보완 및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부적합 KS 인증제품의 신속한 회수 및 시정조치를 유도함 - 수거등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명령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의 지속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수거등 명령 사실을 공표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한 제품 선택을 지원함 - 다만, 실제 소비자 피해 감소 규모 및 금전적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정성적으로 분석함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KS인증기업
활동제목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따른 기업 영향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뢰도 저하 및 제품 판매 감소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발생 여부와 비용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정성적으로 검토함 ㅇ 공표 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적 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공표 등에 따른 기업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ㅇ 또한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정정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표에 따른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불법 제품·서비스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9조의 4 제29조의 5</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 3</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10.29~2026.12.08</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온라인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KS 인증표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서비스를 인증제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불법 제품·서비스의 유통행위는 판매자에 대한 확인 및 유통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협조를 통한 자료 확보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 「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3에서 위임한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절차와 온라인 판매중지 등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불법 제품·서비스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ㅇ(제29조의4)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위반행위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온라인 유통·판매 관련 게시물, 상품정보, 광고 내용 및 판매자 정보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ㅇ(제29조의5)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판매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게시물·상품정보의 삭제 또는 해당 페이지의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업자</td><td>1000여개</td></tr><tr><td>이해관계자</td><td>온라인 제품·서비스
판매자 및 소비자</td><td>온라인 제품·서비스 판매자
및 소비자</td></tr></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판매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 절차를 마련하여 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KS 인증표시의 부정사용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온라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td></tr>
<tr><td rowspan="5">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5">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피규제자</td><td>44.92</td><td></td><td>44.92</td></tr>
<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
<tr><td>정성분석</td><td></td><td></td><td></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d rowspan="11">기타</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11.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 colspan="2">중기영향평가</td></tr>
<tr><td></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 colspan="2">해당없음</td></tr>
<tr><td rowspan="10">12.규제일몰제</td><td>대분류</td><td colspan="3">소분류</td></tr>
<tr><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 colspan="2">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 colspan="2">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 colspan="2">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4">
<table>
<tr><td>일몰설정여부</td><td>일몰조문</td><td>연장여부</td></tr>
<tr><td></td><td></td><td></td></tr>
<tr><td>일몰유형</td><td>일몰설정기간</td><td>일몰주기</td></tr>
<tr><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4"></td></tr>
<tr><td>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td><td colspan="4">
<table>
<tr><td>적용여부</td><td>비용</td><td>편익</td><td>연간균등순비용</td></tr>
<tr><td>적용</td><td>44.92</td><td></td><td>5.67</td></tr>
</table>
</td></tr>
<tr><td>15.규제정비 계획</td><td colspan="4">해당없음 해당없음</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4(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온라인 유통·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상품정보 또는 광고 내용 2. 제1호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2. 요청하는 자료의 내용 및 범위 3. 자료 제출 기한 4. 자료 제출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의5(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중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게시물 또는 상품정보의 삭제 2. 불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게시물 또는 상품정보가 게시된 페이지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의 법적 근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확인된 사실 3. 요청하는 조치의 내용 4. 조치 이행 기한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사유로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온라인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서비스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표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ㅇ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불법 제품·서비스의 유통행위는 판매자 확인 및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인증기업 중심 관리만으로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이에 「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불법 제품·서비스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자료제출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의 절차·방법 구체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절차와 불법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상품정보 삭제 및 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
	내용	자료제출 및 불법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 맡기고, 별도의 세부 절차·방법은 규정하지 않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자료제출 및 삭제·차단 조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자료 확인·제출 및 게시물 삭제·차단 등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대안2	별도의 세부 절차 규정에 따른 부담이 적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사업자별 협조 수준에 따라 조치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불법 제품·서비스의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제품·서비스 판매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청취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규제대안 1은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 삭제·차단 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음

○ 규제대안 2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협조 여부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법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유통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제대안 1을 선택함

3. 규제목표

○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판매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및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반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자 함

○ KS 인증표시의 부정사용 및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은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확인과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

○ 자료제출 및 삭제·차단 조치는 불법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 및 조치기한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규제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해당 의무는 불법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 제품·서비스의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 규모별 차등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전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사업자의 규모 및 실제 자료제출·조치 요청 건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정성적으로 분석
④ 대상 업종		정보통신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⑤ 예비분석내용		◦ 본 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소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자료제출 및 삭제·차단 의무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발생함 ◦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 및 조치기한 조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제 차등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불필요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본 규제는 「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3에 따라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제출 및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제공 및 소비자 피해 관련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중개를 제한하고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관련 조치 의무를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자료제출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의 절차·방법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4.92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자료제출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의 절차·방법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44.92		44.9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4.92		44.92

기업순비용	44.92	연간균등순비용	5.67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불법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행해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자료관리 및 게시물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준수할 수 있음

-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방법, 삭제·차단 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 및 조치기한 조정이 가능하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KS 인증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활용하고, 자료제출 및 삭제·차단 조치의 요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행정조직 및 예산을 활용하여 자료제출 요청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박용갑 의원, ’25. 2. / 박성훈 의원, ’25. 6. / 송재봉 의원, ’26. 1. / 이재관 의원, ’26. 1. / 오세희 의원, ’26. 1. / 정진욱 의원, ’26. 2.)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6. 5.)

○ 산업표준화법 개정·공포 (공포 ’26. 9., 시행 ’27. 3.)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26. 11.)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부처협의): ’26. 10~12월

○ 규제 심사: ’26. 12~’27. 1월

○ 법제처 심사: ’27. 1~2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27. 2월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절차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임

○ 자료제출 및 삭제·차단 의무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한하여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 및 조치기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비례원칙에 부합함

○ 또한 기존 행정체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불법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유통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자료제출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의 절차·방법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44.92		44.9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4.92		44.92
기업순비용		44.92	연간균등순비용	5.67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료제출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의 절차·방법 구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활동제목	불법 제품·서비스 관련 자료제출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
비용항목	기타
비용	44,926,51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요청 건수(자료요청, 판매중지요청) × 투입 인원 × 업무 소요시간 × 시간당 임금(10*2*1*8*35486)
근거설명	**ㅇ 규제비용 식별** - (자료제출 비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산업표준화법」 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게시물·상품정보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정리하여 제출하는 데 따른 인건비가 발생함 -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비용) 불법 제품·서비스에 관한 게시물 또는 상품정보의 삭제, 해당 페이지의 접속경로 차단 등을 요청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발생함 - 자료제출 및 삭제·차단 의무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므로 실제 규제비용은 요청 건수와 업무 소요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규제비용 산출** - (연간 요청 건수) 연평균 약 10건 KS 인증은 법정 강제인증(KC 등)과 달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득하는 임의인증 제도로, 표시의무가 없고 시장 내 허위·부정표시 발생 빈도 자체가 매우 낮은 제도적 특성이 있음. 따라서 본 조치는 시중 전체 제품을 전수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KS 인증이 취소된 제품의 온라인 유통 및 국표원 시판품조사 또는 소비자·경쟁사 제보·신고를 통해 명백한 부정표시 혐의가 특정된 표적 대상에 한정되어 엄격히 집행됨. 이에 따라 기준(Base) 시나리오의 연간 요청 모수를 연간 10건으로 설정함.

- (업무 소요시간) 자료 확인·정리·제출에 게시물 확인 및 삭제·차단에 각각 1명이 1일(8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16시간 소요
- (시간당 임금) 2025년 12월 기준 정보통신업 월평균 임금(6,021,983원)을 월평균 근로시간(169.7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 35,486원을 적용(출처: 국가데이터처 정보통신업 임금자료)
- (연간 규제비용) 자료제출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

= 10건 × 1명 × 16시간 × 35,486원

= 5,677,760원/년

- (총 규제비용) 규제시행년도인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할인율 4.5%를 적용한 결과, 분석 기준년도인 2026년 기준 총 규제비용의 현재가치는 약 44.93백만원으로 추정됨
- (연간균등순비용) 총 규제비용의 현재가치를 연금현가계수 7.9127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약 5.68백만원으로 추정됨

ㅇ 민감도 분석

- 실제 자료제출 및 온라인 판매중지 조치 실적이 없어 요청 건수와 업무 소요시간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구분	연간 요청 건수	기업당 소요시간	연간 비용	10년 현재가치
낮음	5개	16시간	2.84백만원	22.46백만원
기준	10개	16시간	5.68백만원	44.93백만원
높음	20개	40시간	28.39백만원	224.63백만원

- 자료제출 및 온라인 삭제·차단 조치의 실제 요청 건수와 업무 소요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낮음·기준·높음의 3개 시나리오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 10년간 규제비용의 현재가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약 44.93백만원이며, 요청 건수 및 업무 소요시간에 따라 약 22.46백만원에서 224.63백만원까지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높은 시나리오는 요청 건수 증가와 업무 소요시간 확대를 동시에 가정한 것으로, 실제 규제비용은 정부의 조치 요청 실적과 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온라인 제품 · 서비스 소비자
활동제목	불법 제품 · 서비스의 온라인 유통 차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편익항목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온라인 거래환경 조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KS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 및 상품정보 삭제, 접속경로 차단을 통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KS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소비자가 인증 여부를 신뢰하고 제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함 - 다만, 소비자 피해 예방에 따른 편익은 실제 구매 차단 건수와 피해 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성적으로 분석함